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2020. . .	
연월일	(제 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위원의 직급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와 시기를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나.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 1)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며,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록요청한 데이터를 6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

- 2)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용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 수집·활용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10조)
- 3)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데이터 제공요청서를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 4) 데이터 보유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제공 여부 결정을 통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5) 데이터 제공 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상호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다.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

- 1)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합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공공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2)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분석 등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3)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요건과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1조)
- 4)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방법 등을 정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3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2개 기관
3. 시·군·자치구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2개 기관

4. 법 제2조제3호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 법의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2개 기관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 분석등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분야, 성별, 연령 등을 고르게 고려하여 법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한다.
-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을 위한 분과위원회(이하 “조정지원분과위원회”라 한다)

2. 위원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출석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과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말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시행기간에 추진할 부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활용 데이터의 조사 및 등록요청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 수립 년도에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에 대하여 공동활용 여부에 관한 해당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재정적 제약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른 데이터의 등록·관리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방법 및 활용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 수집·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적 외의 용도 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2.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데이터 파기
3. 데이터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이행

제11조(데이터 제공 요청 방법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제공요청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제공)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거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제공 결정)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결정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공이 결정된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데이터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의 대상 · 범위 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데이터 가공에 드는 비용
2. 데이터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3. 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비용
4.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보유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1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데이터 제공거부에 대한 조정절차 등) ①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요청(이하 “조정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지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공공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당사자 간 제공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지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합의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을 종결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심의를 거쳐 조정결과를 확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정요청에 대한 조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업무협약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
2. 데이터 항목
3. 이용 기간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5. 비밀유지
6. 그 밖에 업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민간데이터를 구매하기 위한 대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계 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7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계·제공하는 소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최신성, 정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연계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통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 분석등에 공동 참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분석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참여방식, 참여기간 등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컨설팅·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공동활용 데이터의 등록 실태
2.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된 데이터의 수집·활용 실태
3.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요청 및 제공 결정 등 운영 실태
4. 법 제15조에 따른 제공받은 데이터의 유지관리 실태
5.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따른 운영 실태
6.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운영 실태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실태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체 점검을 위한 점검기준 및 점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표창 및 포상금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 우수 기관 및 우수자에 관한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기관 및 우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우수사례 발굴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사례 공모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2021년 3월 10일까지 확정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출 기한 및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 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 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연 락 처	(044) 205 - 2282